

노년문화연구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은 노인 문화 연구에 관한 관련지식 및 기술의 연구개발, 산학협력, 교육, 국제교류 등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를 실현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호서대학교 노년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사업내용)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실버산업연구에 대한 지원
2. 산·학·관·연 협동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3. 세미나, 학술회의 개최 등 각종 연구진흥사업 수행
4. 기술지도,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원 등 각종 산학협력 사업 수행
5. 전문인력 양성 (학부, 대학원생 등)
6.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7. 산업체 기술인력의 수탁교육
8. 교육 관련 수익사업 전개
9. 기타 연구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교육부, 연구부, 대외협력부, 행정지원부 등을 둘 수 있다.

- ② 교육부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 ③ 연구부는 연구 기획 및 세부과제별 연구를 담당한다.
- ④ 대외협력부는 산학협력사업과 대외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 ⑤ 행정지원부는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구성)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성원을 둘 수 있다.

1. 연구소장: 1명
2. 부소장: 1명
3. 연구소에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원, 박사후연구원(Post-Doc), 전문위원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다.
4. 행정직원 약간 명
5. 연구소내의 연구원 임용은 대학의 ‘연구원 임용규정’에 준용한다. 단, 연구보조원은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6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소장: 1명
2. 부소장: 1명

제7조(임명) ① 연구소장은 본교 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소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과 부소장의 협의 하에 소장이 연구원을 임명한다.

제8조(업무)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연구를 총괄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및 회의)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방법
2. 예산 및 결산
3. 규정 개정 발의
4.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재 정

제11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

1.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경비
2.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
3.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
4.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제12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5 장 폐 소

제13조 (폐소)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

제 6 장 보 고

제14조 (보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 다음해 3월말까지
(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
2. 매 회계연도 결산서 - 다음해 3월말까지
3.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월말까지
4.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

제 7 장 보 칙

제15조 (준용)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공포와 동시에 종전의 규정은 폐지한다.